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53992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77,279,320원 및 그 중 76,847,527원에 대하여 2022. 5. 9.부터 2023. 12. 28.까지는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76,847,52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76,847,5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 중 76,847,527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책임경영이행약정(이하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2조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피고 B의 책임경영의무를 열거하고 있는 사실1), 그 중 제6호는 '제6조에서 정하는 부수의무의 준수'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6조 제1항은 '약정인은 제2조의 책임경영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통지하겠으며 관련 자료와 장부 열람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4조 제1항은 '약정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책임경영의무를 위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제1조의 보증약정으로 발생한 보증금액의 잔액을 회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 B에게 책임경영의무 준수 여부를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자 원고가 피고 B에게 책임경영약정 제6조(부수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52,500,000원을 회수하겠다는 통지를 하였으나 도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2조 제6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보증잔액 76,996,355원 중 대위변제잔액 76,847,52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약정인의 의무는 재단이 약정인의 책임경영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하는데 협력할 절차적 의무에 지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2조 제1, 2, 3, 4, 5, 7호의 의무와 동일시할 수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2조 제1, 2, 3, 4, 5, 7호가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서 제2조 제6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책임경영이행약정에 따른 보증잔액 중 위 대위변제잔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창우

별지

1) 제1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의 준수, 제2호 공문서, 사문서의 위·변조 및 허위(부실) 자료 제출 금지, 제3호 업무상횡령, 배임, 부당금품 제공 및 수수, 자금유용 등의 금지, 제4호 제단보증서 담보대출의 용도외 사용 금지, 제5호 경영에서 탈퇴 또는 이 약정체결일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재단의 동의를 받음, 제7호 기타 책임경영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 금지